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0. 25 선고 2024가단155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9. 27.

판결 선고2024. 10. 25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5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8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이민구

별지